

예산총칙

2025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299,596,500	38,987,895
일반회계		1,239,498,469	37,184,954
특별회계		60,098,031	1,802,941
	기타특별회계	60,098,031	1,802,941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618,160	78,545
	수질개선 특별회계	50,859	1,526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6,759,468	202,784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26,728,290	801,849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20,481,661	614,450
	주차장 특별회계	2,272,933	68,188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20,100	603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821,000	24,630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345,560	10,367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856,384천원(일반 4,000,000, 재해·재난목적 3,856,384)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74,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